

#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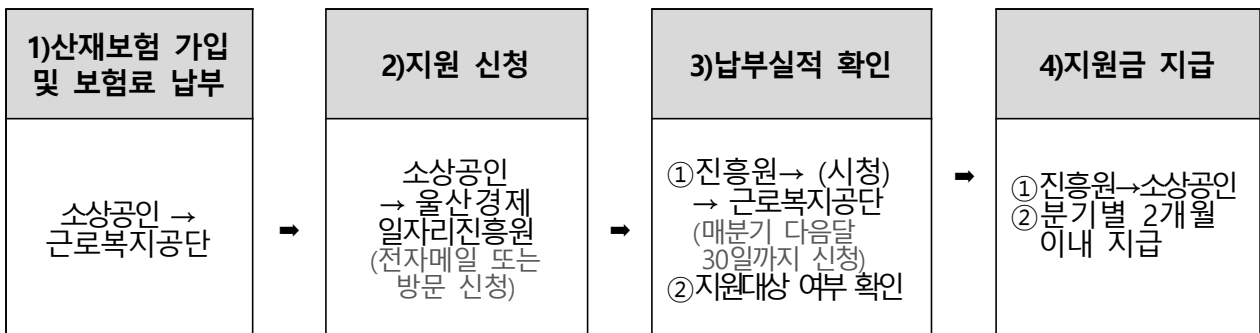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3년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산재보험료 소급 지원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2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신청가능

※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대보험 부과체계(익월 10일 납기)를 감안하여 분기말 2개월 이내에 지급 (단, 이월금액은 차년도 사업 확정 후 지원예정)

## □ 지원대상

- 대상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
- 지원중단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또는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년
  - 기 가입자는 2026년 1월부터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수준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산재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22%)\*】

(기준: '26.1월, 단위: 원)

등 급	기준보수액(월)	월보험료	본인부담액	지원율	등 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본인부담액	지원율
1등급	2,511,200	55,240	27,620	50%	7등급	5,592,780	123,040	73,820	40%
2등급	3,024,800	66,540	33,270		8등급	6,106,380	134,340	80,604	
3등급	3,538,390	77,840	38,920		9등급	6,619,970	145,630	101,940	30%
4등급	4,051,990	89,140	44,570	10등급	7,133,570	156,930	109,850		
5등급	4,565,590	100,440	60,260	11등급	7,647,170	168,230	117,760		
6등급	5,079,180	111,740	67,040	12등급	8,160,761	179,530	125,670		

※'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6/1,000 별도 가산

※ 정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8호, 2024.11.28.)제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할 경우에 시비 지원율을 등급 구간별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10.(목)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 선정기준 :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산재보험 가입여부, 소상공인) 충족 시 선정
- 신청서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

서류명	비고
① 지원 신청서(서식1)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체서식
②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체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온라인 : 홈택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④ 본인 통장 사본	• 사업자 동일 명의
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⑥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파일명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PDF

#### \* (서류 제출시 확인사항)

- ① 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음
- ②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5

### 관련 문의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52-283-7195)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확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 ] 가입	[ ] 미가입
	본인 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 있음	[ ] 없음
가입정보	[ ] 등급	가입일	. . .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지원 기간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변경 시
- 상시근로자 변경,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동일사업 중복신청으로 수혜받은 지원금은 반환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5. 소상공인확인서(최근3개월 이내)
------	--



□ 산재보험 비교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

	근로자 산재보험(64~)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08~)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입의무	· <b>의무</b> 가입	· <b>임의</b> 가입(기준보수액 1~12등급 중 선택)
보험료	· <b>사업주</b> 가 <b>근로자분</b> 전액 부담	· <b>사업주</b> 가 <b>본인분</b> 전액 부담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임의가입)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보험료율 : 업종별 상이(업종별 산재발생빈도 반영)
  - ※ 도매 및 소매업(0.8%), 부동산업(0.9%), 숙박 및 음식점업(0.8%), 운수 및 창고업(1.3%)

□ 산업재해 범위

- 산업재해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함

[산업재해]

- ▶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 ▶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회사차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 □ 보험 혜택

### ○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8가지) 내 급여신청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

#### 【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병원비, 간병비, 약제비, 이송료 등)
휴업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간병급여	장해등급 1~2급자 중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해당 시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유족보상연금 지급 연금 : (평균임금 x 365) 의 52~67% 상당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 2년 경과 후 중증 요양상태(1~3등급)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장례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 분
직업생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

####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

(단위 : 원)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511,200	82,560	7등급	5,592,780	183,870
2등급	3,024,800	99,450	8등급	6,106,380	200,760
3등급	3,538,390	116,330	9등급	6,619,970	217,640
4등급	4,051,990	133,220	10등급	7,133,570	234,530
5등급	4,565,590	150,100	11등급	7,647,170	251,410
6등급	5,079,180	166,990	12등급	8,160,761	268,299

\* 기준보수월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2025.12.31.)

####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의미 >

월 평균 보수 1등급(2,511,200원)인 사업주가 요양으로 5일간 휴업이 필요할 때  
 ⇒ 휴업급여(306,460원) : 평균임금(82,560원)의 70%(61,292원)\*5일